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45 발의연월일: 2024. 12. 31.

발 의 자:주호영·고동진·강대식

권영세 · 서명옥 · 조은희

박상웅 • 박준태 • 김장겸

조지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서는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란 및 공포·불안감 유발 부호·영상 등배포죄'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 강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어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마약류 확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마약류 범죄를 단속하고 예방하여야 하는 직무에 있는 경찰관 의 마약 투약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마약류 관련 범죄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국가 공무원법」의 규정과 맞추어 정비하고, 추가로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9조 및 제27조 단서).

법률 제 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의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 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 토킹범죄
-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제9조 중 "제8호에 규정된 죄"를 "제8호 각 목에 따른 죄"로 한다. 제27조 단서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8조의2·제59조부터 제64조까지·제65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제9조 및 제2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	
로 임용될 수 없다.	<u>.</u>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6의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u>
	<u>성의약품 중독자</u>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8.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u>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	<u>해당하는 죄</u>
<u>된 죄</u> 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	
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u><신 설></u>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u><신 설></u>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u>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u>
	제3호에 규정된 죄
<u><신 설></u>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신 설>

9. • 10. (생략)

제9조(벌금형의 분리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제7호 또는 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선고하여야한다.

제27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해당하고, 제8조제2항제6호는「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죄	
9.·10. (현행과 같음)	
제9조(벌금형의 분리선고)	
제8호 각 목	
에 따른 죄	
제27조(당연퇴직)	
·	
「젓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만 해당한다.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 <u>1항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u> 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 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 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 <u>조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u> 법률」 제58조ㆍ제58조의2ㆍ제 59조부터 제64조까지·제65조 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